



CHILD CARE SUBSIDY PROGRAM (CCSP)
CCSP 제공자 보조금 지불
종료 통지서
CCSP Provider Payment
Termination Notice

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 전화번호	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 팩스번호
수혜자/의뢰인 ID 번호	날짜

아래 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되던 보조금 지원이 _____일에 종료됩니다. 탁아서비스 제공자가 조기달성자(Early Achievers)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한 요구사항이 위에 적힌 종료일까지 충족되지 못하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 보조금 수혜 자격이 상실됩니다. WAC 170-290-0125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 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 |

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되던 보조금 지원이 _____일에 종료됩니다. WAC 170-290-0125에 따라 제공자의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.

탁아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되던 보조금 지원이 _____일에 종료됩니다. WAC 170-290-0130에 따라 제공자의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.

새로운 탁아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**Child Care Aware**에 <http://wa.childcareaware.org/>으로 연락하시거나 **1-800-446-1114**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.

CCSP Application Part 2A 유연허 제공자 정보 등록서를 동봉해 드렸으니 귀하의 새로운 유연허 제공자는 이 정보 등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WCCC Application Part 2B 가족/친구/이웃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록서도 동봉해 드렸으니 귀하와 귀하의 새로운 면허 불요 제공자는 이 정보 등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족/친구/이웃이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제공자는 신청서 **Part 2B**에 있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운전면허증, 주발급 신분증, 여권, 또는 군인 신분증과 같은 탁아서비스 제공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의 판독가능한 사본
- 해당 탁아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한 사회보장카드의 판독가능한 사본
- 그린 카드, 영주권, 또는 고용승인서(EAD) 등과 같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탁아 서비스 제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.
- 신원조회 승인서(Background Authorization form), DSHS 09-653. 이 승인서는 WCCC 허가 직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. 신원조회가 필요한 모든 인물에 대한 모든 신원조회 결과가 접수되고 제공자가 승인을 받은 날짜 전에 제공된 탁아서비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질문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하십시오.

심의회 권리

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사무실 주소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, P O Box 42489, Olympia, WA 98504-2489로 연락하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.

-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제공되기를 원하면 이 조치 유효일까지 또는 심의회가 이 조치 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1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또는
- 이 서신을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귀하는 심의회에서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변호사나 귀하가 선택한 사람을 대동해 귀하를 대변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무료 법적 조언이나 대변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